

#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발의연월일 | 2019. . .    |
| 발 의 자 | 권재욱 의원 외 12명 |

#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욱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br>번호 |  |
|----------|--|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권재욱·김낙관·김재상·김재우·박교상  
송용자·신문식·양진오·이선우·이지연  
장미경·장세구·홍난이 의원(13인)

## 1. 제안이유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조항 및 용어 수정,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변경에 따른 부서 신설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게 됨.
- 나. 공동주택관리지원 범위에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차단기 등을 추가하여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제외대상을 신설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라. 공동주택의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조항을 변경(안 제2조, 제4조)
- 나. 공동주택관리지원의 기준 및 대상 변경(안 제24조제1항, 제2항)
- 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제외대상 신설(안 제24조제3항)

라. 공동주택 지원 대상 중 관련 호 신설(안 제24조의3)

-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설

마. 구미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7조)

바. 구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용어를 변경(안 제38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기 타 : 해당없음

##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제50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제49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라 사용검사(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세대수 150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2. 총 세대수 150 이상인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3. 단지별 총 사업비는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제2항의 지원대상 중 한가지 항목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1. 단지 내 도로 및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이하 “보수”라 한다)
2. 상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건축물 내부 시설물은 제외)
3.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
4. 옥외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5. 옥외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6. 경로당의 보수
7. 자전거 보관대의 보수
8. 수목의 전지
9.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의 보수·설치
10.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설치
11. 석축·옹벽·담장 등의 보수
12. 그 밖에 공동시설 중 제26조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보수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조금의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2. 3년 이내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3. 전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공동주택
4.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다만, 추진이 장기화된다고 입증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공동주택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공동주택 전자투표의 지원) ① 시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전체 비용의 80

퍼센트 이하, 최대 1백만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신청서”를 “신청서”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14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업무 관계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미시의회에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주택관리사,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주택업무”를 “공동주택업무”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서                                                                                                                                                                                                                              |                  |       |         |     |
|-------------------------------------------------------------------------------------------------------------------------------------------------------------------------------------------------------------------------------------------|------------------|-------|---------|-----|
| 신청자                                                                                                                                                                                                                                       | 단 지 명            |       | 동 수     |     |
|                                                                                                                                                                                                                                           | 주 소              |       | 세 대 수   |     |
|                                                                                                                                                                                                                                           | 입주자 대표<br>회의 의결일 |       | 준 공 일   |     |
|                                                                                                                                                                                                                                           | 연 락 처            | (FAX) |         |     |
| 신 청 내 용                                                                                                                                                                                                                                   |                  |       |         |     |
| 구 분                                                                                                                                                                                                                                       | 사 업 개 요          |       | 소요예산(원) | 비 고 |
| 도로·주차장                                                                                                                                                                                                                                    |                  |       |         |     |
| 상 하 수 도                                                                                                                                                                                                                                   |                  |       |         |     |
| 가로등·보안등                                                                                                                                                                                                                                   |                  |       |         |     |
| 어린이놀이터                                                                                                                                                                                                                                    |                  |       |         |     |
| 주민운동시설                                                                                                                                                                                                                                    |                  |       |         |     |
| 경 로 당                                                                                                                                                                                                                                     |                  |       |         |     |
| 자전거보관대                                                                                                                                                                                                                                    |                  |       |         |     |
| 수 목 전 지                                                                                                                                                                                                                                   |                  |       |         |     |
| 기 타                                                                                                                                                                                                                                       |                  |       |         |     |
| <p>「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 _____ 입주자대표 (서명 또는 인)</p> <p><b>구미시장</b> 귀하</p> <p>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일 경우 동의서), 장기수선계획서(사본), 공사비산출도서, 장기수선충당금(사본)</p>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받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적용범위) -----<br>-----<br>----- 제50조에 따라<br>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계획인<br>가)-----<br>-----<br>-----<br>-----<br>-----<br>-----.         |
| 제4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기능) -----<br>--- 제49조제1항 및 「도시 및<br>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br>라 사용검사(정비사업의 준공인<br>가를 포함한다)--. -----<br>-----<br>-----<br>-----. |
| 1. ~ 10. (생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제24조(지원범위 및 대상)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 제24조(지원범위 및 대상)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

(이하 “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② 비용은 시부담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로 하며, 150세대 이하는 시부담 8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로 한다.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세대수 150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2. 총 세대수 150 이상인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3. 단지별 총 사업비는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제2항의 지원대상 중 한가지 항목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1. 단지 내 도로 및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이하 “보수”라 한다)
2. 상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건축물 내부 시설물은 제외)
3.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
4. 옥외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  
가 3분의 2 이상인 공동주택단  
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  
다.

5. 옥외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6. 경로당의 보수
7. 자전거 보관대의 보수
8. 수목의 전지
9.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의 보수·설치
10.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설치
11. 석축·옹벽·담장 등의 보수
12. 그 밖에 공동시설 중 제26조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보수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조금의 지원을 제  
외할 수 있다.

1.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2. 3년 이내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3. 전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공동주택
4.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다만, 추진이 장기화된다고 입증된 경우 지원할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로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에 한한다.

1. 단지 중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공동주택 단지 중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3. 수목의 전지

4.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5. 체육시설의 보수

6. 자전거 보관대 설치

7. 옹벽·담장 녹화

8. 그밖에 공동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⑤ 시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수 있다.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공동주택

<삭 제>

<삭 제>

<신 설>

제25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동주택 관리주체  
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  
주택 공동시설 지원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  
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1명 이상을 선정하여 해  
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들의 2  
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

제24조의3(공동주택 전자투표의  
지원) ① 시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  
용의 일부(전체 비용의 80퍼센  
트 이하, 최대 1백만원)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  
-----  
-----  
-----  
-----  
-----  
----- 신청  
서-----  
-----  
-----  
-----  
-----  
-----  
-----

여 신청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 · 노인장애인 · 건설수변 · 건축 · 공원녹지 · 수도 · 하수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시 공무원 10명

2.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미시의회의원 2명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11명 -----

-----

-----

-----

-----.

-----

-----

-----

-----.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업무 관계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주택관리사,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                                                                                                                                                                                                                                                                                                                                   |
|------------------------------------------------------------------------------------------------------------------------------------------------------------------------------------------------------------------------------------------------------------------------------|-----------------------------------------------------------------------------------------------------------------------------------------------------------------------------------------------------------------------------------------------------------------------------------------------------------------------------------|
| <p>3. 토목전문가 및 건축전문가<br/>또는 주택관리사 각 1명<br/><u>&lt;신 설&gt;</u></p> <p>③ ~ ⑤ (생 략)</p> <p>제38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생 략)</p> <p>② 감사반의 반장은 <u>주택업무</u><br/>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시장<br/>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br/>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br/>3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br/>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 <p>③ <u>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u><br/><u>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u><br/><u>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u><br/><u>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u><br/><u>담당과장으로 한다.</u></p> <p>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br/>항까지와 같음)</p> <p>제38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현<br/>행과 같음)</p> <p>② ----- <u>공동주택업</u><br/><u>무</u> -----<br/>-----<br/>-----.<br/>-----<br/>-----.</p> <p>③ (현행과 같음)</p> |
|------------------------------------------------------------------------------------------------------------------------------------------------------------------------------------------------------------------------------------------------------------------------------|-----------------------------------------------------------------------------------------------------------------------------------------------------------------------------------------------------------------------------------------------------------------------------------------------------------------------------------|

## 관계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⑥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

야 한다.

④ 시장·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 중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하여 시행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24조의3)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

## 3. 미첨부 사유

-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인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차등되므로 소요재정의 추계가 어려우며, 연평균 예상되는 비용이 1억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begin{array}{ccccccccc} \text{의무공동주택} & & \times & \text{단지 평균} & & \times & \text{세대당} & & \times & \text{시부담율} & = & \text{전자투표} \\ \text{단지수} & & & \text{세대수} & & & \text{투표비용} & & & & & \text{비용} \\ (158\text{단지}) & & & (580\text{세대}) & & & (700\text{원}) & & & (80\%) & & (51,318\text{천원}) \end{array}$$

## 4. 작성자

공동주택과 지방시설서기 신란수 (480-2862)